

서울특별시 마포구 건축안전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안

의안 번호	19 - 48
----------	---------

제출년월일 : 2019. 4. .

제 출 자 : 서울특별시 마포구청장

1. 제정이유

지진·화재·노후건축물 및 공사장 안전관리 등 지역 내 건축물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마포구 건축안전특별회계를 설치하고자 마포구 건축안전특별회계의 설치·운영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규정코자 함.

2. 주요내용

- 가. 조례 제정의 목적(안 제1조)
- 나. 특별회계 설치 및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안 제2조 ~ 제3조)
- 다. 특별회계 세입에 관한 사항(안 제4조)
- 라. 특별회계 세출에 관한 사항(안 제5조)
- 마. 특별회계 일시차입에 관한 사항(안 제6조)
- 바. 특별회계 잉여금의 처리에 관한 사항(안 제7조)
- 사. 특별회계 존속기한에 관한 사항(안 제8조)
- 아. 시행규칙에 관한 사항(안 제9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건축법」 및 「서울특별시 건축 조례」

나. 예산조치 : 비용추계서 첨부

다. 합 의 : 해당사항 없음

라. 규제여부 : 해당사항 없음

마. 기타사항

1) 입법예고 : 2019. 3. 14. ~ 4. 3. (제출된 의견 없음)

2) 가정복지과의 자치법규 성별영향분석평가 결과 : 원안 동의

3) 감사담당관의 자치법규 부패영향자율평가 결과 : 원안 동의

4) 서울특별시 마포구 조례·규칙심의회 심의·의결(2019.4.23.)

서울특별시 마포구 건축안전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건축법」 제87조의3 및 「서울특별시 건축 조례」 제50조에 따른 서울특별시 마포구 건축안전특별회계의 설치 및 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특별회계의 설치) 서울특별시 마포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지진·화재·노후건축물 및 공사장 안전관리 등 지역 내 건축물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마포구 건축안전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를 설치한다.

제3조(관리·운용) ① 특별회계는 구청장이 관리·운용한다.
② 특별회계의 사무는 건축물의 안전관리사업을 주관하는 부서장이 담당한다.

제4조(세입) 특별회계의 세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
2. 「건축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80조에 따라 구청장이 부과·징수하는 이행강제금의 100분의 30
3. 그 밖에 건축물의 안전관리사업 관련 수입금

제5조(세출) 특별회계의 세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87조의3제3항에 따른 경비, 인건비, 조사·연구비
2. 「서울특별시 건축 조례」 제50조제2항에 따른 사업비

제6조(일시차입) ① 특별회계의 운영자금이 일시적으로 부족한 때에는 일시 차입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일시차입금의 원리금은 해당 회계연도 내에 상환하여야 한다.

제7조(잉여금의 처리) 특별회계의 결산잉여금은 다음 연도 세입에 이입(移入)한다.

제8조(존속기한)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은 2023년 12월 31일까지로 하되, 「지방재정법」 제9조제4항에 따라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서울특별시 마포구 건축안전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비용추계서

I. 비용추계 요약

1. 비용발생 요인 및 관련조문 : 제4조(세입) 및 제5조(세출)
2. 비용추계의 전제
 - 관내 건축물의 안전관리를 위한 마포구 건축안전센터의 설치·운영에 관한 연도별 소요예산 및 내역
 - 비용추계기간 : 2019. 7. ~ 2023. 12.
 - 재원확보 방안: 「건축법」 제80조에 따라 구에서 부과·징수하는 건축이행강제금의 100분의 30을 “건축안전특별회계”로 설치 및 운용
3. 비용추계의 결과 (단위 : 천원)

구분 \ 연도		2019	2020	2021	2022	2023	합계
세입	건축이행강제금의 30% <small>※ 3개년 평균 약 7%원</small>	700,000	700,000	700,000	700,000	700,000	3,500,000
	소계(a)	700,000	700,000	700,000	700,000	700,000	3,500,000
세출	인건비 (건축사, 건축구조기술사)	90,000	180,000	180,000	180,000	180,000	810,000
	운영에 필요한 경비	10,000	10,000	10,000	10,000	10,000	50,000
	안전점검·조사에 필요한 장비 등 구입비	50,000	3,000	3,000	3,000	3,000	62,000
	각종 사업비 (기존 건축물 화재안전성능보강 지원 사업 등)	100,000	100,000	100,000	100,000	100,000	500,000
	소계(b)	250,000	293,000	293,000	293,000	293,000	1,422,000
□ 총 비용(a-b)		450,000	407,000	407,000	407,000	407,000	2,078,000

※ 엔지니어링 노임단가 기준

- 1) 건축사: 281,833원 x 22일(평균근무일수) x 12개월 = 약7500만원
- 2) 구조기술사: 367,654원 x 22일(평균근무일수) x 12개월 = 약9700만원

4. 재원조달 방안

- 「건축법」 제80조에 따라 구에서 부과·징수하는 건축이행강제금(세외수입)의 30%로 조달

5. 덧붙이는 의견 : 구체적인 세출은 건축안전센터 사업내용 변동 등으로 차후 변경될 수 있음.

6. 작성자

작성자 이름	도시환경국 건축과 김성진
연락처	02-3153-9405